

#### [서식 예] 공시최고신청서(약속어음)

# 공 시 최 고 신 청 서

신청인 〇〇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증서의 중요한 취지 :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

## 신 청 취 지

별지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시최고를 한 뒤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일 까지 권리신고 등이 없으면 위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신 청 원 인

- 1.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이었는데, 20〇〇. 〇. 〇. 〇〇 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 소재 신청인의 집에서 위 약속어음을 분실하여 현재까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2. 따라서 위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소 명 방 법



1. 소갑 제1호증 미지급증명서(◉●은행)

1. 소갑 제2호증 분실신고접수증명서(◎◎경찰서)

# 첨 부 서 류

1. 소갑 제1호증(미지급증명서) 1통

1. 소갑 제2호증(분실신고접수증명서)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0. 00.

위 신청인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### ㅇㅇ지방법원 귀중



#### [별 지]

# 증서의 중요취지

1. 종류 및 수량 : 약속어음 1매

2. 액 면: 금 5,000,000원

3. 지급기일 : 2000. 00. 00.

4. 지급지 : 서울특별시

5. 지급장소 : ○○은행 ○○지점

6. 수취인 : ㅇㅇㅇ

7. 발행지 : 서울특별시

8. 발행인 : ○○무역주식회사

9. 발행일 : 20 ○ ○ . ○ .

10. 최종소지인 : ○○○. 끝.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 관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475 내지 제497조
불복절차 및 기 간	·공시최고의 불허결정 및 제권판결의 각하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
	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 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478조, 제488조)
	·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
비용	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
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
	・신문공고료 : 각 지방에 따라 다르나 서울에서는 500만원 이하의
	소액 증권의 경우 25,000원(대상증서가 복수인 경우 그 증서가
	같은 종류로서 번호가 연결된 것인 때는 초과 1매당 일정액이
	가산됨), 500만원 초과는 50,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함.
	(공시최고 신문공고의 전면폐지 및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로 대
	체 :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
	규(재민 2000-6) 개정 2008. 12. 10. [재판예규 제1258호, 시행
	2009. 1. 1.] 참조 )
의 의	공시최고의 절차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
	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
	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
	고, 아무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
	그 지위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하며, 법률로 정한 경우에
	만 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475조).
기 타	• 신청인은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 증서를 특정하기 위하여 목록을 별
	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
	명서, 미제시증명서, 미상환증명서 등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음. 이 경우 접수담당 법원 사무관 등은 증명서에 기재된 증서의 내역을 법원전
	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(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
	소화에 관한 예규(재민 2000-6)}.
	·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
	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
	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
	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,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
	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
	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
	금을 청구할 수 없음(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다18614 판결).



#### ※ (1) 관 할 법 원(민사소송법 제476조)

-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 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다만,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에 신청할 수 있다.
- ②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(민사소송법 제492조)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다만,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,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.
-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.